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4. 11. 6 선고 2024가단267301 판결 [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철

피고주식회사 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 2024. 11. 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,
나. 1,896,357원을 지급하고,
다. 2024. 8. 1.부터 가항 기재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3,19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(무변론판결)

판사김종찬

별지